#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23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정호·신영대·전진숙

박 정 • 윤후덕 • 김동아

이연희 · 허종식 · 정성호

박희승 · 이훈기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 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 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 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 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 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 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전기사업의 주요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4조 등).
- 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 스열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 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3조 및 제43조의 2).
-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8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제78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12·제18호 및 제2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각 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이하 "전기가스열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7조의3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정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0호의2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

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 의"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를 "전기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를 "소속 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위원회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를 "전기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를 "한국전력거래소"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 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 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6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65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 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전기가스열위원회와"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를 "총리렁으로"로 한다.

제9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 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의"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에너지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른 사무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행위 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전기가스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행위나 전기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전기가 스열위원회의 행위나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중개시장운영규 칙은 이 법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중개시장운영규칙으로 본다.
-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한국 전기안전공사는 이 법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의11. (생 략)	1. ~ 12의11. (현행과 같음)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	12의12
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	
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u>산</u>	<u>秦</u>
<u>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u>리령으로</u>
것을 말한다.	
12의13. ~ 17. (생 략)	12의13. ~ 17. (현행과 같음)
18. "일반용전기설비"란 <u>산업통</u>	18 <u>총리령</u>
<u>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소규	<u>으로</u>
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	
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	<u>.</u>
다.	
19. • 20. (생 략)	19. • 20. (현행과 같음)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21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	
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	연결하는	전선로	(통신용
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
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 최소화형	할 수	있는 일
정 규.	모 이하의	발전실	널비로서
산업통	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u>산업통</u>
<u>상자원부장관은</u>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 ③ (생 략)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총리령으로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u>「에너</u>
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전기
가스열위원회(이하 "전기가스
열위원회"라 한다)는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③ (현행과 같음)
<b>4</b>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생 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 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 을 정한다.

1. ~ 4. (생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전기가스열위원
회의
<u> </u>
 제6조(보편적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u>전</u>
<u>기가스열위원회</u>
· 총리령으로
0 7 0

<u>으로</u>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	<u>&lt;삭 제&gt;</u>
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	
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	
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6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u>총리렁으로</u>
정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	
기신사업의 종류별로 <u>산업통상</u>	<u>전기</u> 가스
<u>자원부장관에게</u> 등록하여야 한	열위원회에
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2
등록하려는 자는 <u>산업통상자원</u>	<u>총리령으로</u>
<u>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산</u>	<u>전기가스열</u>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	위원회에
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 야 한다. 1.·2.(생 략)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7 제) ① ~ ⑤ (생 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 의 개시 의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1.·2. (현행과 같음) ④
<u>전기</u>
가스열위원회에
⑤
<u>총리렁으로</u>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 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 의 개시 의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u>전기가스열위</u> 위회가

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 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 3. (생략)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u>다만,</u>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u>산업통</u> <u>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①
총리렁으로
<u> </u>
1. ~ 3. (현행과 같음)
②
<단서
<u>삭제&gt;</u>
1. ~ 3. (현행과 같음)
③
<u>총리령</u>
<u>으로</u>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정으로 본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② (생략)
-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 ③ 7 (생 략)
  -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7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

인수의 신고 등) ①
<u>총리령으로</u>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u>총리령</u>
<u>으로</u>
<u>전기가스열위원회에</u>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u>허가를</u>

업정지를	명할	수 9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또는	제4
호의2의 ㅇ	]느	하나여	]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ਰੋ	허가를	· 취소	하여
야 하다.				

- 1. ~ 4. (생략)
- 4의2.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u>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 5. · 6. (생략)
-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 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 한 경우
- 8. 제18조제3항에 따른 <u>산업통</u><u>상자원부장관의</u> 명령을 위반한 경우
- 9. (생략)
-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전기가스열위원회가</u>
5. · 6. (현행과 같음)
7
키키키 가서이
<u>전기가스열위</u> 의 회 이
<u>전기가스열위</u> 원회의
<u>원회의</u>
원회의
원회의  8 <u>전기가</u> 스열위원회의
원회의
원회의 8전기가 스열위원회의 9. (현행과 같음) 10전기가
원회의

-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위반한 경우
- 11. ~ 14.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 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제23조제1항에 따른 <u>산업통</u><u>상자원부장관의</u> 명령을 위반 한 경우
- 6. (생략)
- ③ ~ ⑦ (생 략)
-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저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

10의2
전기가스열위원회의
11. ~ 14.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1. ~ 4. (현행과 같음)
,
5 <u>전기가</u>
<u>스열위원회의</u>
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ll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처 기
<u>전기</u>

<u> 가스열위원회의</u>	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u>&lt;삭 제&gt;</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
	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작성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u>의</u>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u>&lt;삭 제&gt;</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u>쳐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
고 등) ①	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
<u>전기가스</u>	한 약관을 작성하여 <u>산업통상</u>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 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 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 지 아니할 것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 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 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열위원회에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 1-1
<u>총리령으로</u>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b>.</b>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 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 로 본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 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⑦ (생략)
-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 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
  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
  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 ② (생략)

 ⑥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u> 선기기 그 크게 된 위 는</u>
⑦ (현행과 같음)
8
<u>총리령으</u>
<u>로</u>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
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u>총리령으로</u>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 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생 략)

-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 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생략)
  -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 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 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 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 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3)
전기가스열위원회의
<u>.</u>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
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현행
과 같음)
②
<u>전기가스열위원</u>
회가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u>총리렁으로</u>

정한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 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 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 래소는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 존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 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

제 <b>1</b> -	[7조(전기요금의 청구)
- ĭ	<u>총리</u> 정 <u>으로</u>
- - 제]	  [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총리령으로
-	
(	 ② <u>총리령으로</u>
- (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u>전기사업자등에게</u>

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u>산</u>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 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 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 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 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① (현행과 같음)
2
<u>전</u>
<u>기가스열위원회가</u>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총리령
<u>으로</u>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수있다.

# ③ • ④ (생 략)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저하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

②
<u>소속</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u>전기사업자에게</u>
<단서
<u>삭제&gt;</u>

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 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아니한다.

- 1. ~ 6. (생략)
- ② (생 략)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 자와 허가권자가 시 · 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 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 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 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 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ㆍ징수) ①
미토권권 O 근
<u>대통령령으로</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 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 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 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생 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 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생략)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생략)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 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 역주민·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8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	
 ◎ (취레기 기 O)	
<ul><li>⑨ (현행과 같음)</li><li>៧ 25 기 등 기 등 이</li></ul>	الدالد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하다.

#### ② (생략)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 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 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 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 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 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하다.

- ② (생 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b></b>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
의 신고)
원기가스열위
원회에
·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
제47조(중신사업사 중의 즉기)
<u>전기가스열위원회가</u>
<u>.</u>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
지)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u>
② (현행과 같음)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평가 및 조사 등 (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 제공· 제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u>
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हो
<u>.</u>
ll 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
공급계획)

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 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 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 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
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
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제30조(손실보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 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 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기가스열위원
회의
<u> </u>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b></b>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손실보상) 전기가스열위원
<u> 회는</u>
•

-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 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현행과 같음)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 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 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 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 ①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MULTAL 21 1 21 4 C / 11 0
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③전기가
스열위원회는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③ (생략)

제34조(차액계약) ① (생 략)

-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 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 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 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차액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기가스</u> 9위원회가
3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지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u>산업통상자원부령으</u> 로 정하는 수입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생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현

<u>전기가스열위원</u>
<u> </u>
<u></u>
<b></b> .
· <u>&lt;삭 제&gt;</u>
<u> </u>
세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1. • 2. (현행과 같음)
3총리령으로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략)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u>
<u>자원부장관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세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생 략)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
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u>
<u>자원부장관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세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

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

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행과 같음)
②
<u>전기가스</u>
열위원회의
<u>&lt;삭 제&gt;</u>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기가스</u>
열위원회의
<u>&lt;삭 제&gt;</u>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u>총리렁으로</u>

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 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 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 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 거래의 정지·제한이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 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 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u>전기가스열위원회가</u>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u>전기가스열위원회는</u>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u>전기가스열위</u>
원회는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 ② ③ (생 략)
  -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치 등) ① (생 략)

-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 | 행계획
- 4. (생략)
- ③ · ④ (생 략)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 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

	 	— -	 _	_	—	_	_	—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 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 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 무기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 〈삭 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
-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경영학 • 전기공학이나 그 밖 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_「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 직기간은 합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 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삭 제>

<삭 제>

-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 에 관한 사항
-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 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관한 사항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 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 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 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 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 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 수에 관한 사항
-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 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 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 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폐지 등에 관한 사항
-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

   령에 관한 사항
-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

   한 사항
-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 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 를 요청한 사항
-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협의에 관한 사항
-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삭 제>

관한 사항

-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 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 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 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 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 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 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 · 기능 ·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 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 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

<삭 제>

<삭 제>

<삭 제>

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 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 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u>총리령으로</u>
<u>전기가스열위</u>
원회의
②
<u>총리령으</u>
로
전기가스열
<u>위원회에</u>
③
<u>총리</u> 령
<u>으로</u>
<b>4</b>
전기가스열위원회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 · 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멸실 • 파손되거나 전시 • 사 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 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u>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 저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제64조

⑤
<u>총리령</u>
<u>으로</u>
6
<u>총리</u>
<u> 령으로</u>
세63조(사용전검사)
<u>총리령으</u>
<u>로</u>
세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생략)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67조(기술기준)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현행과 같음)
②
총
 리령으로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
체 검사)
총리령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
제67조(기술기준) ① 전기가스열
위원회는
기 인커 ㄴ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 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 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 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 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 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물밑 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에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 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 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 설)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 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u> 정하 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

<u>.</u>
·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u>전기</u>
<u>가스열위원회의</u>
1. ~ 4.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
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۳۱
<u>선</u>
<u>기가스열위원회가</u>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 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 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가스열위원회와-----야 한다.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u>총</u>리령으로 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상각 등) 산업통상자원부 제94조(상각 등) 전기가스열위원 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 회는-----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 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 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2. (생략)

-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전기가스열위원회는
1. • 2. (현행과 같음)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저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 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 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③ (생 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 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 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세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전기가스열위원회의
② <u>전기가스열위</u>
<u>원회</u>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
⑤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
  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8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u>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lt;삭 제&gt;</u>
2. <u>전기가스열위원회</u>
제108조(과태료)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u>전기가스열위원회</u>